

[일련번호 : 1]

경 기 도 체 육 회

주 의 조 치

[제 목] 구매 및 계약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그라운드골프협회

[내 용]

경기도그라운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그라운드골프협회 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협회 「규정」 제2조(목적 및 지위)에 따르면 협회 사무국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4조(사업)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회 「규정」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과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계약의 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본회에서 발송한 사업계획(안)에 명시되어 있는 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였고 정산하였습니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그라운드골프협회는 당시 해당업체와 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한줄 알았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그라운드골프협회장은

해당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약의 체결)에 따라 본회 사업계획에서 안내한 계약서 및 기타 증빙 자료를 공정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세입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경기도체육회

개선요구

[제 목] 조직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그라운드골프협회

[내 용]

경기도그라운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그라운드골프협회 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협회 「규정」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따르면 협회는 조직 운영에 있어 체육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규약변경), 제53조(규약등 제정·개정), 제37조(각종위원회의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협회는 조직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1. 규약(기본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미이행

협회 「규정」 제52조(규약변경) 제1항에 의거 협회 규약을 제·개정할 시 본회의 승인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협회는 20**.**.**.자 개정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본회는 20**.**.**.자 승인하였고 그 이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제규정(기타규정) 제·개정 미실시

협회 「규정」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 제2항에 의거, 협회는 규약 이외에 협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협회는 운영에 관한 세칙을 제외하고 각종위원회 규정 등을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3. 각종위원회 미구성

협회 「규정」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각종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지되어있다.

그러나 협회의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스포츠공정위원회, 경기력향상 위원회 등 위원회를 설치·구성 되어있지 않으며, 규정 또한 제정되어 있지 않아 목적과 기능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그라운드골프협회장은

「규정」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따라 협회는 조직 운영에 있어 체육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본회 「경기도 종목단체 규정」 제52조(규약변경), 제53조(규약등 제정·개정), 제37조(각종위원회의 설치) 등을 준용하여 상위 3가지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조치 후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경 기 도 체 육 회 개 선 요 구

[제 목] 문서관리 및 기록물 보안 취약

[소 속 기 관] 경기도그라운드골프협회

[내 용]

경기도그라운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문서관리 및 기록물 보안사항을 「경기도그라운드골프협회 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문서 및 기록물관리를 처리하고 있다.

협회 「규정」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협회는 사무국을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록물을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외의 규정은 별도로 정하게 되어있으며,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 본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협회는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나 보존하고 있지 않았으며, 협회 사무국 관계자의 인수인계 과정 등에서 수많은 기록물이 분실되고 현재 사무국에서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그라운드골프협회는 문서관리 및 기록물관리가 취약한 점을 공감하였으며 향후 본회(경기도체육회)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그라운드골프협회장은

규정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체계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해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을 위해 본회(경기도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경 기 도 체 육 회 개 선 · 권 고 요 구

[제 목] 회계업무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그라운드골프협회
[내 용]

경기도그라운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그라운드골프협회 규정」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협회는 「규정」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협회는 회계업무 수행의 주요기준과 절차를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계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회 「회계 규정」 제2조(적용)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회계관계 사무에 관하여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의 각종 보조금 및 자체예산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2가지의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1. 도비 보조금 1개 사업 1개 통장 미운영

협회 「규정」 제2조(목적 및 지위), 제4조(사업)에 의거, 협회는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협회 「규정」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 받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에 의거, 협회는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 통장(계좌)을 개설해야하며, 그 사본을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협회는 도비 보조금으로 각종 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협회 계좌 「○○ ***_****_****_**」로 일원화하여 도비를 보조받아 1개 사업 1개 통장(계좌)운영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2.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관련

본회 「회계 규정」 제11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르면, 회계 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회계관계 직원의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회계 관련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무국 회계 운영을 위해 재정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일 현재 협회는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 사무국장, 회장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그라운드골프협회는 1사업 1통장을 사용을 해야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통장 개설에 어려움이 있으며,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보험 가입에 대해 재정적인 문제는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그라운드골프협회장은

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에 따라 도비 보조금 관리의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사업의 개별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개선)

나. 회계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어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예산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권고)